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
 한국건강증진개발원				
배 포 일		2021. 6. 4. / (총 8매)		
보건복지부	과 장	이윤신	전 화	044-202-2820
건강증진과	담 당 자	김수영		044-202-2822
한국건강증진개발원	팀 장	장경화		02-3781-2211
지역금연팀	담 당 자	김지연		02-3781-2217

일거양득, 금연도 하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고!

-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년, 8,824명 참여하고 5,393명 감면받아 -

□ 지난 2019. 12. 3. 「국민건강증진법」이 개정되면서 2020. 6. 4.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이하였다.

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(과태료)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**과태료 납부 대상자가*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**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○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,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-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*하였으나 '20.6월부터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여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.

□ 「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*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

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,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**를 이용하면 100%를 면제한다.

*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<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>

구분	종류	이수기준
금연교육 (과태료 50% 감경)	(온라인) 온라인금연교육센터	3시간 이상 이수
	(오프라인) 지방자치단체장(보건소) 실시	
금연지원 서비스** (과태료 면제)	보건소 금연클리닉	3개월 이상 등록유지, 4회 이상 대면상담
	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	8~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
	전문치료형 금연캠프(집중치료 금연캠프)	캠프(5일)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, 2회 이상 대면상담
	금연상담전화(1544-9030)	100일 프로그램 이수

○ 다만,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,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.

○ 또한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른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*과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.

*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적용하는 감경 (100분의 20 범위 이내의 감경)

□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시행 1년이 경과하여 누적 참여자는 총 8,824명이며, 이 중 5,393명(61.1%)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('21. 5. 31. 기준).

○ 흡연 과태료 감면을 위한 서비스 유형별 신청건수(전체 8,824건)는 금연교육 3,917건(44.4%), 금연상담전화 3,653건(41.4%), 보건소 금연클리닉 1,133건(12.8%) 순으로 나타났다.

○ 감면혜택을 받은 서비스 이수 완료자 현황도 금연교육이 3,362건 (62.3%)으로 가장 높았고, 금연상담전화 1,467건(27.2%), 다음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523건(9.7%) 순으로 나타났다.

* 금연상담전화 1,829건(50.1%), 보건소 금연클리닉 515건(45.5%)이 현재 진행 중

< 감면제도 서비스 유형별 누적 인원 수 >

(단위 : 건, %)

	신 청	감면혜택	이수 비율	진행 중 (신청대비 비율)	기간 만료	무효
금연 교육	3,917 (44.4)	3,362 (62.3)	85.8	125 (3.2)	429	1
보건소 금연클리닉	1,133 (12.8)	523 (9.7)	46.2	515 (45.5)	92	3
단기금연캠프	2 (0.0)	1 (0.0)	50.0	0 (0.0)	1	0
금연치료지원사업	119 (1.3)	40 (0.7)	33.6	52 (43.7)	27	0
금연상담전화	3,653 (41.4)	1,467 (27.2)	40.2	1,829 (50.1)	356	1
합 계	8,824 (100.0)	5,393 (100.0)	61.1	2,521 (28.6)	905	5

※ 출처 :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, 금연상담전화 시스템(2021.5.31.기준, 6.3 조회.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 변동 가능)

* 이수비율 : 신청 중 감면혜택 비율

기간만료 : 제도 신청 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(교육 1개월,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) 내 이수하지 못하여 이수기간이 만료된 건수

무효 :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로 적발되어 흡연 과태료 감면 제도 신청이 무효된 건수

□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“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.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.”고 하였다.

○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“과태료 부과를 통한 금연구역 준수보다 금연을 통한 금연구역 준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점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.”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문
2.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신청 절차
3. 질의응답

붙임 1

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문

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



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.

* 국민건강증진법 개정('19.12.3.), 시행('20.6.4.)

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

50% 감면
금연교육 이수

온라인 금연교육

-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감면 교육 3차시 이수(총 3시간)
- 주소 : <http://lms.khealth.or.kr>
- * 모바일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

오프라인 금연교육

- 인근 보건소에서 3차시 이수(총 3시간)
- 해당 기관에 교육 일정, 장소 등 문의

100% 면제
금연지원서비스 참여 (4개 중 택1)

보건소 금연클리닉

- 3개월 이상 등록 유지, 4회 이상 대면상담
- 인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등록

전문치료형금연캠프

- 캠프 수료 후 (5일) 3개월 이상 등록 유지, 7회 이상 상담 (5일 캠프 중 5회, 캠프 종료 후 2회)
-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안내 참고 후 등록

병의원 금연치료

- 8~12주 과정 이수
-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안내 참고 후 등록

금연상담전화

- 100일 프로그램 이수(11회 이상 상담 진행)
- 금연상담전화 1544-9030로 전화 등록



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절차



1

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

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원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(방문, 우편, Fax 등)

- ※ 우편 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
- ※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,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, 중복적용 불가
- ※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와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는 적용 제외,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중단
-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서 미 제출시 신청 불가

2

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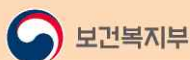
- ※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미 제출시 서비스 이수하여도 감면적용 불가 (서비스 신청서 먼저 제출 필수)
- ※ 금연교육 이수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중 한가지만 선택

3

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감면신청서, 이수확인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

금연교육 신청서 제출 후 1개월,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감면신청서와 이수확인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 (방문, 우편, Fax 등)

- ※ 이수 후 각 이수 기관에 이수 확인서 요청





✓ 위반행위 적발

교육과 서비스 중 한가지 선택

교육



교육을 받으니까?
서비스를 받으니까?

- 온라인 금연교육 센터
- 오프라인 금연교육



적발 보건소 제출 ※ 의견제출 기한 내

-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, 제출

교육 신청 기관 접속 또는 방문

- 금연교육신청

교육 등록 방법

온라인 금연교육

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
주소 : <http://lms.khealth.or.kr>

오프라인 금연교육

인근 보건소 등록(교육일정 등 문의 필요)

교육 신청 기관 접속 또는 방문

- 금연 교육(3차시) 이수
- 감면신청서 출력(온라인) 또는 발급(오프라인)



적발 보건소 방문

※ 교육 신청서 제출 1개월 이내

- 감면신청서 제출 (이수확인서 제출 불필요)

과태료 감면 (50%)

서비스



교육이랑 서비스 중에
선택해주세요!

- 보건소 금연클리닉
- 전문치료형금연캠프
- 병·의원 금연치료
- 금연상담전화

적발 보건소 제출 ※ 의견제출 기한 내

-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, 제출

서비스 신청 기관 방문 또는 전화

- 금연지원서비스 등록

서비스 등록 방법

보건소 금연클리닉
인근 보건소 방문 등록

전문치료형금연캠프
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
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

병의원 금연치료
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
병의원 기관안내 참고

금연상담전화
1544-9030 전화등록

서비스 신청 기관

- 각 금연서비스 이수 후 감면신청서, 이수확인서 발급

※ 금연치료 이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
이수확인서 요청 필요

이수 기준

보건소 금연클리닉
3개월 이상 등록 유지, 4회 이상 대면상담

전문치료형금연캠프
캠프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 유지,
7회 이상 대면상담(5일 합숙캠프 중 5회, 캠프종료 후 2회)

병의원 금연치료
8~12주 과정 이수

금연상담전화
100일 프로그램 이수(11회 이상 상담 진행)

적발 보건소 방문

※ 서비스 신청서 제출 6개월 이내

- 감면신청서, 이수확인서 제출

과태료 감면 (100%)

붙임 2

흡연 과태료 신청 절차

□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수를 해야 한다.

○ 감면 신청

-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(이하 '제도 신청자')은 교육(감정) 또는 금연지원서비스(면제)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'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'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

○ 신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유예

-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아래의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며 제도 신청자는 해당 기간 내에 금연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해야한다.

① 금연교육 신청자 :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1개월

②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 :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6개월

○ 감면 결정

-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도신청자가 그 유예기간 이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및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나, 기한 내에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○ 기타 사항

-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○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.

	종류	이수기준
교육	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	3시간 이상 이수
	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실시(온라인)*	
금연지원 서비스	보건소 금연클리닉	3개월 이상 등록 유지, 4회 이상 대면상담
	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	8~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
	집중치료형 금연캠프	캠프(5일)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, 2회 이상 대면상담
	금연상담전화(1544-9030)	100일 프로그램 이수

*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누리집(<http://lms.khealth.or.kr>)

붙임 3

질의응답

1.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?

-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를 감면을 2회 받은 분, 현재 과태료를 체납중인 분, 자진납부 감경(20%)을 받고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.

2.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를 다 했는데 감면 신청서를 제출 안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-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건에 한해 과태료 감면을 적용하므로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감면신청서 및 이수확인서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발한 지자체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